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
2.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 성 자	이름	김수현
	담당부서 (과)	석탄광물산업과		직급	사무관
	국장	유법민		연락처	044-203-5263
	과장	임형진		이메일	kshskw@korea.kr

2022. 3. 22.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명)

< 규제 개요 1 >

기본 정보	1.규제 사무명	광해 방지기술인 자격기준																																																
	2.규제 조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관련, 별표1																																																
	3.위임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3.28 ~ 2022.05.07.(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이 개정 * (광해 방지기술인) 「법률 제2조(정의)제8호」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정부개입 필요성) 법 개정으로 후속조치로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인정 및 관리를 위해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을 기초로 한 경력 인정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 규정																																																
	7.규제내용	○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광해방지 기술인의 등급을 구분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하고 ‘별표 1’을 신설하여 그 등급별 세부기준을 마련 (안 제1조의2 제1항) ○ 2022. 6. 16. 시행 예정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제2조 제8호 나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제2항) ○ 광해방지기술인의 종류, 등급 및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 신설(별표 1)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 집단 : 광해방지기술인 ○ 이해관계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단위: 개소, 명) <table><tr><th>전문분야</th><th>산림</th><th>토양</th><th>수질</th><th>지반</th><th>광미</th><th>먼지</th><th>갈리</th><th>계</th></tr><tr><td>업체수</td><td>38</td><td>55</td><td>28</td><td>31</td><td>15</td><td>19</td><td>7</td><td>193</td></tr><tr><td>고용 기술인력</td><td>287</td><td>423</td><td>250</td><td>228</td><td>124</td><td>143</td><td>71</td><td>1,526</td></tr></table> * 3개 이내 전문분야를 겸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 및 기술인력 중복 ※ 광업자원분야 종목별 합격자 현황 (1977~2021) <table><tr><th>자원관리 기술사</th><th>광산보안 기사</th><th>광산보안 산업기사</th><th>광산보안 기능사</th><th>시추 기능사</th><th>광해방지 기술사</th><th>광해방지 기사</th><th>계</th></tr><tr><td>100명</td><td>950명</td><td>220명</td><td>13,105명</td><td>4,152명</td><td>68명</td><td>408명</td><td>19,003</td></tr></table>							전문분야	산림	토양	수질	지반	광미	먼지	갈리	계	업체수	38	55	28	31	15	19	7	193	고용 기술인력	287	423	250	228	124	143	71	1,526	자원관리 기술사	광산보안 기사	광산보안 산업기사	광산보안 기능사	시추 기능사	광해방지 기술사	광해방지 기사	계	100명	950명	220명	13,105명	4,152명	68명	408명
전문분야	산림	토양	수질	지반	광미	먼지	갈리	계																																										
업체수	38	55	28	31	15	19	7	193																																										
고용 기술인력	287	423	250	228	124	143	71	1,526																																										
자원관리 기술사	광산보안 기사	광산보안 산업기사	광산보안 기능사	시추 기능사	광해방지 기술사	광해방지 기사	계																																											
100명	950명	220명	13,105명	4,152명	68명	408명	19,003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단위: 개소, '21.12월 기준)								
		전 문 분 야								
		구분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먼지날림·광염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광해방지 사업의 감리	계
		'21.12	36	55	26	30	15	19	7	188
		* 중복 등록 제외 총 106개 업체								
	9.규제목표	○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광해방지 기술능력이 부족한 자가 광해방지사업에 참여하거나,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이 경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토목, 환경 등의 분야로 이직이 잦은 실정인 바, -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력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광해방지사업이 전문기술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해기술인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호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인정 및 관리를 위해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을 기초로 한 경력 인정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 (편익) 광해방지사업이 숙련된 기술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광해기술인의 기술향상과 권익 강화에도 기여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큼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학력·경력자를 말한다.

[별표 1]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 (제1조의2 관련)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 급 기술인	1.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인	1.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인	1.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인	1.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범위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광해방지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별표 2 제2호에 의한 전문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라. 산업기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마.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산림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업·자원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광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업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채광·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기술인은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고, 광해기술인의 복리증진과 광해방지기술 및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제도 도입**(「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
 - 개정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광해방지분야 **기술인력의 권익 보호** 도모
 - ※ 법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법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 정부개입의 필요성

-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과 법률이 위임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위한 학력 및 경력 등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을 구분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별표 1’을 신설하여 그 등급별 세부기준을 마련 (안 제1조의2 제1항)
- 2022. 6. 16. 시행 예정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270호, 2021. 6. 15. 공포) 제2조 제8호 나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조의2 제2항)
- 광해방지기술인의 종류, 등급 및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별표 1)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유사제도* 자격기준을 합리적 수준에서 차용하여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등급 구분 및 인정범위 세부기준 마련
- * 엔지니어링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환경영향평가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문광해방지사업자·광해방지기술인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 개정안 의원발의**
 - * 이철규의원 등 14인, 제2107844호(2021. 2. 2.). 제384회 국회(임시회)
 - * 법률 개정안 공포(21.6.15) 및 시행(22.6.16)
- 개정안 입법예고(22.3~22.4 예정)

3. 규제목표

-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광해방지 기술능력이 부족한 자가 광해방지사업에 참여하거나,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이 경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토목, 환경 등의 분야로 이직이 잦은 실정인 바,
-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력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광해방지사업이 전문기술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해기술인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호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률(제2조제8호, 제18조의2)이 규정한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제도의 범위 내에서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 광해방지 분야 관련 기술자격, 학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력인정 체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해당 기준의 설정은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해방지분야에 특화된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

- 광해방지분야 관련 기술자격종목은 동법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의 기술능력(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술자격 종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 분야와의 연계성 고려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광산피해방지법 제2조제5호, 제11조), 광해방지 기술분야와 연계되는 광업분야의 사업범위(광업법 제3조제2호)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의 기준이 되는 광해방지업무의 범위 설정
 - 기술인력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법령*의 자격기준의 형식과 내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차용
- * 엔지니어링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제도명	주무부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3(자격요건 및 인정)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5의2(자격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

제도명	주무부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 제26조(기술자의 정의 및 신고)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엔지니어링기술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06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제도가 부재하여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자가 광해방지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고,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이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지 못해 토목, 환경 등의 분야로 이직하는 실정인 바,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기술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 없이 규제 집행 가능

* 별도 고시를 통해 위탁기관 지정·고시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시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서 지원 예정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전문광해방지사업자·광해방지기술인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 개정안 의원발의*
* 이철규의원 등 14인, 제2107844호(2021. 2. 2.). 제384회 국회(임시회)
** 법률 개정안 공포('21.6.15) 및 시행('22.6.16)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관련고시) 제·개정안 마련('22.3.)
- 입법예고('22.3.~'22.4.)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하위법령 제·개정 후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실적 현황 등을 점검하여 향후 추가 개선사항 도출 예정

3. 종합결론

-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에 관한 동 시행령 개정안은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에 필요한 자격기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를 통해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제도에 대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일관된 규제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규제 개요 2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관련, 별표4																																																																						
	3.위임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3.28 2022.05.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 개정 * (광해방지기술인) 「법률 제2조(정의)제8호」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정부개입 필요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근거 규정 신설																																																																						
	7.규제내용	○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제22조의2와 별표4로 신설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광해방지기술인 ○ 이해관계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단위: 개소, 명) <table><tr><td>전문분야</td><td>산림</td><td>토양</td><td>수질</td><td>지반</td><td>광미</td><td>먼지</td><td>감리</td><td>계</td></tr><tr><td>업체수</td><td>38</td><td>55</td><td>28</td><td>31</td><td>15</td><td>19</td><td>7</td><td>193</td></tr><tr><td>고용 기술인력</td><td>287</td><td>423</td><td>250</td><td>228</td><td>124</td><td>143</td><td>71</td><td>1,526</td></tr></table> * 3개 이내 전문분야를 겸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 및 기술인력 중복 ※ 광업자원분야 종목별 합격자 현황 (1977~2021) <table><tr><td>자원관리 기술사</td><td>광산보안 기사</td><td>광산보안 산업기사</td><td>광산보안 기능사</td><td>시추 기능사</td><td>광해방지 기술사</td><td>광해방지 기사</td><td>계</td></tr><tr><td>100명</td><td>950명</td><td>220명</td><td>13,105명</td><td>4,152명</td><td>68명</td><td>408명</td><td>19,003</td></tr></table>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단위: 개소, '21.12월 기준)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7">전 문 분 야</td><td rowspan="2">계</td></tr><tr><td>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td><td>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td><td>오염수질의 개선사업</td><td>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td><td>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td><td>먼지날림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td><td>광해방지 사업의 감리</td></tr><tr><td>'21.12</td><td>36</td><td>55</td><td>26</td><td>30</td><td>15</td><td>19</td><td>7</td><td>188</td></tr></table> * 중복 등록 제외 총 106개 업체			전문분야	산림	토양	수질	지반	광미	먼지	감리	계	업체수	38	55	28	31	15	19	7	193	고용 기술인력	287	423	250	228	124	143	71	1,526	자원관리 기술사	광산보안 기사	광산보안 산업기사	광산보안 기능사	시추 기능사	광해방지 기술사	광해방지 기사	계	100명	950명	220명	13,105명	4,152명	68명	408명	19,003	구분	전 문 분 야							계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먼지날림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광해방지 사업의 감리	'21.12	36	55	26	30	15	19	7	188
	전문분야	산림	토양	수질	지반	광미	먼지	감리	계																																																															
	업체수	38	55	28	31	15	19	7	193																																																															
고용 기술인력	287	423	250	228	124	143	71	1,526																																																																
자원관리 기술사	광산보안 기사	광산보안 산업기사	광산보안 기능사	시추 기능사	광해방지 기술사	광해방지 기사	계																																																																	
100명	950명	220명	13,105명	4,152명	68명	408명	19,003																																																																	
구분	전 문 분 야							계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먼지날림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광해방지 사업의 감리																																																																	
'21.12	36	55	26	30	15	19	7	188																																																																
9.규제목표	○ 권리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 (비용) 광해방지기술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정취소 및 자격정지																																																																						

	분석 (정성분석)	처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 (편익)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해방지기술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명료성과 공정성 확보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큼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다목과 라목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된 경우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	인정 취소			
다.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별표 1에 따른 기술자격자에 한정한다)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고, 광해기술인의 복리증진과 광해방지기술 및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제도 도입**(「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
- 개정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광해방지분야 **기술인력의 권익 보호** 도모
 - ※ 법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법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 정부개입의 필요성

- 법률 개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세부기준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4 신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법률(제18조의4제1항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에서 **제재가능한 조치 수단으로 인정취소 또는 자격정지만을 규정함**에 따라 그 외 규제 대안 마련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문광해방지사업자·광해방지기술인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 개정안 의원발의***
 - * 이철규의원 등 14인, 제2107844호(2021. 2. 2.), 제384회 국회(임시회)
 - * 법률 개정안 공포('21.6.15) 및 시행('22.6.16)
- 개정안 입법예고('22.3~'22.4 예정)

3. 규제목표

- 권리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광해방지기술인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인정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달리 규정**
 - 법률에 따른 처분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해방지기술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명료성과 공정성 확보
 - 국가기술자격을 근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제한(자격의 취소, 정지) 내용과 연동되도록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련법령 상호 간의 충돌이나 모순 방지

【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유사제도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함

행정처분의 기준 일반비교 (광산피해방지법 vs 환경영향평가법)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별표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위반행위	처분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된 경우	인정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취소
나.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인정취소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
다.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별표1에 따른 기술자격자에 한한다)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인정정지 3년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격을 중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인정정지 3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제도명	주무부서/ 처분기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인정 및 인정취소 등)	국토환경정책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4(인정 및 인정취소 등 근거) 동법 시행령 제77조(인정취소 등 처분권한 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06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제도가 부재하여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자가 광해방지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고,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이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지 못해 토목, 환경 등의 분야로 이직하는 실정인 바,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기술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 없이 규제 집행 가능

* 별도 고시를 통해 위탁기관 지정·고시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시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서 지원 예정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전문광해방지사업자·광해방지기술인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 개정안 의원발의*

* 이철규의원 등 14인, 제2107844호(2021. 2. 2.). 제384회 국회(임시회)

** 법률 개정안 공포('21.6.15) 및 시행('22.6.16)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관련고시) 제·개정안 마련('22.3.)
- 입법예고('22.3.~'22.4)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하위법령 제·개정 후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실적 현황 등을 점검하여 향후 추가 개선사항 도출 예정

3. 종합결론

- 동 시행령 개정안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저해하는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해방지기술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명료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